

의안번호	제 239호
의 결	2015년 월 일
연 월 일	(제 343호)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5년 10월 02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239호
------------	--------

제출연월일 : 2015년 10월 02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동물보호센터 지정요건을 완화(규제완화)하여 상위법령과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

2. 주요내용

- 동물 등록 제외 지역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 동물보호센터 지정 대상 요건 사항 개정(안 제 5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사유서 붙임참조)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동물등록 제외 지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 지역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으로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물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연임할”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2회”를 “두 차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로 한다. 다만, 시설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업적 목적을 가진 대상은 제외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 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 · 자문 ·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또는 민법상 친족(4촌)등)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조의3(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제2항 중 “이를 지체 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당하는”을 “상당한”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소요된”을 “들은”으로, “산정”을 “산정(算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따른 소요경비”를 “들은 경비”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입양”을 “입양(入養)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생 략)</p> <p>② 제1항 각 호에 등록을 신청한 동물에 <u>대하여는</u>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 ④ (생 략)</p>	<p>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대해서는</u> ----- ----- -----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동물등록 제외지역) ① 법 <u>제12조제1항에</u>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가 해당 제외지역을 정하여 고시한다.</p> <p>1. 오지(奥地), 벽지(僻地) 2.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p> <p>② 동물 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군수도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제4조(동물등록 제외 지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단서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 지역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으로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p> <p><삭 제> <삭 제></p> <p>②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물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생 략) <u>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u></p> <p>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p> <p>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p> <p>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p> <p>4.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p> <p>③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u>충청북도 홈페이지</u>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p> <p>④ (생 략)</p>	<p>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로 한다. 다만, 시설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업적 목적을 가진 대상은 제외한다.</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③ ----- ----- <u>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u>----- -----.</p>

현 행	개 정 안
	<p><u>용역 · 자문 ·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u></p> <p><u>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또는 민법상 친족(4촌)등)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u></p> <p><u>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u>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p><u>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제5조의3(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u></p>

현 행	개 정 안
	<p><u>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u> <u>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u> <u>알려야 한다.</u></p> <p><u>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u> <u>하는 경우</u></p> <p><u>2.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u> <u>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u> <u>하기 어려울 경우</u></p> <p><u>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u> <u>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u> <u>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u> <u>지 않은 경우</u></p> <p><u>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u> <u>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u> <u>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u> <u>이익에 활용한 경우</u></p> <p><u>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u> <u>다고 인정할 경우</u></p>
<p>제8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p> <p>(생 략)</p> <p>②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 실·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 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 를 확인하여 소유자가 확실한</p>	<p>제8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p> <p>(현행과 같음)</p> <p>② ----- ----- ----- -----</p>

현 행	개 정 안
경우 <u>이를 지체 없이</u> 반환하여야 한다.	----- --- <u>지체 없이</u> ----- -----.
③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실 ·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u>상당하는</u>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 ----- ----- ----- <u>상당한</u> ----- --.
제9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 ② (생 략) ③ 도지사는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에 <u>소요된</u> 비용을 <u>산정</u> 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도지사에게 귀속된 해당 동물에 <u>대하여</u> 는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 · 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들은</u> ----- <u>산정</u> <u>(算定)</u> ----- ----. ④ ----- ----- ----- <u>대해서</u> 는 ----- ----- -----.
제10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및 보호비용) ① (생 략) ②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소	제10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및 보호비용)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유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청구하는 보호조치에 <u>따른 소요</u> 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11조(수수료) 1. (생 략)</p> <p>2. 유기동물을 <u>입양</u> 또는 기증 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p>	<p>② ----- ----- -----<u>들은 경비</u> -----. 제11조(수수료) 1. (현행과 같음) 2. ----- <u>입양(入養)</u> ----- -----</p>

관계법령 발췌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4.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표 4의 지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 및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 사 유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금회 개정사항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제출함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① 국회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작성자

농정국 축산 과장 신유호